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경 전문직 신설 필요성에 관한 사례연구

- 전라북도 전주시를 대상으로 -

이명우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Needs for Establishing Professional Personnel Posi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 - The Case of Chonju City, Chollabuk-Do -

Lee, Myung-Wo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knowledge and the rationale for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 personnel posi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LA) in local Government of Korea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adoption system of professional personnel organization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Germany.

I have analyzed the case of Chonju City, Chollabuk-Do, recruited professional personnel of LA by using informal career position. to justify the needs and the division of professional Landscaping works of the city and to figure out drawbacks of the current adoption system of professional personnel in South Korea.

I hav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that 1) City Mayor in Korean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proper authorizing rights of recruiting the special personnels for performing urban policy, which is under controls of the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s. 2) because of no official position status for specialist in the fields of LA, the Chonju City had been recruited them as Urban Planner status through an informal process, 3) the section of Park and Urban Forestry was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Department of Culture and Multimedia Industry, 4) the fields of specialized works of LA are defined as the work of ecopolis design and planning, biotope networking, ecological bridge and ecological restorations, and 5) the professional positions for LA should be established in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 for the urgent

need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Key Words : professional personnel posi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local Government, eco-city, Chonju City, ESSD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국면에 접하고 있다. 작금의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아울러 본질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고난도의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미 각 분야별로 균형적 개발, 지속적 개발이라는 고난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도시 조성, 생태 농촌마을의 조성, 하천복원, 환경 친화적 관광지개발 등의 선진국형 과제연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로 조경분야의 학자와 연구원들이 선두적으로 참여하여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각개의 부서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별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종합적이며 실천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학문적 배경을 갖는 전문가적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조경분야인 경우 가로수관리 및 조림이라는 임업의 하부 세부분야로서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난 90년대 초부터 조경학회에서는 공무원 임용령상 빠져 있는 조경직제를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98년에 조경직제 신설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조경학회에서는 99년이 시작되면서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관련 공무원의 면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공무원의 방문, 서명활동 등을 완료하였다. 현재는 우리 나라 행정조직 개편 프로젝트에 이 조경직 신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조경직 신설을 위한 활동에는 이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경학회에서는 법리 법제적 당위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행정업무상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

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문직 채용과 관련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와 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문헌을 통해서 고찰하고, 시대적 수요와 선진국 사례를 통한 조경전문직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조경전문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전주 시 사례를 통해서 공무원 임용령상 조경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용한 편법 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경관련 조직과 업무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조경직제 신설을 위한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경전문직 채용과 조직에 필요한 기초사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우리 나라 공무원 직위분류제도의 성격과 문제점

1. 지방자치제도상의 공무원제도

원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제는 주민통치, 주민협의, 주민참여의 원리 등 자치적 이념에 기초하여 권력의 분권화와 자율화의 촉진, 주민에 의한 선택의 존중, 중앙집중화된 권력의 축소, 국가와 상급기관에 의한 통제의 약화, 조직과 기능의 다양화, 관리와 협동화의 촉진 등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으로는 지역정치의 활성화, 지방정부의 정치화,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등을 촉진한다(기사연, 1991; 김병준, 1994; 법제처, 1998).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실시 이전에는 중앙부서인 내부부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사권을 독점하여 지자체를 거의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시대에는 단체장부터 주민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고 이에 따라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제도상으로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조직

의 통제는 다음의 3가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첫째, 총원 관리제에서 표준정원 관리제로의 전환이다. 총원 관리제는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97년 도입된 표준 정원제는 최근 6년간의 변환추세를 반영하여, 자치단체별로 차별적으로 정원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에서는 표준정원 이내의 조직을 운영하면 교부세,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간접 통제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둘째, 지자체내의 기구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행정조직내의 총 기구수는 최고 허용범위내에서 허용하되, 기구를 축소하면서도 보직수는 그대로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도의 공통 필수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을 두어,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보임되도록 하였다. 셋째, 직군별, 직급별로 최대한도를 지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원은 직군별로 일반직 공무원이 최소 몇 % 이상이고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이 최대 몇 % 이하라는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 일반직의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 위주의 행정기관의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하위 자치단체로 갈수록 일반직의 비율이 높다. 직급별 기준은 상위직을 늘이려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이다(임도빈, 1997).

이렇게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의 성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자체의 행정조직 구성과 지방공무원 채용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자율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적 특수성에 부응하는 전문직의 필요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이다. 즉, 지방자치는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되는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 전략을 가능하게 하도록 독자적인 조직의 구성과 인사권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인사권 독점, 예산독점 및 채용방법의 경직성 등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강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조직재량권의 한계

우리 나라 지자체장은 규칙제정권, 관리집행권 및 임명권 등의 인사권과 조직재량권을 갖는다(법제처, 1998). 즉,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도라고 한 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위임 없이도 제정될 수 있는 조례와 달리 위임이 없이는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아울러 집행기관이 관할하는 사무의 원활한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장으로서의 단체장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 나라 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조직재량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등 공통필수기구를 제외한 국의 명칭을 바꾸거나 국의 수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실, 국, 본부의 사무분장 범위 내에서 과외 담당관이하의 기구를 축소하거나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셋째, 현 정원과 기구 총 수의 범위 내에서 실, 국, 본부와 5급 이하 장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설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현 정원범위 내에서 기관, 부서간 인력 조정을 할 수 있고 6급 이하의 직렬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장의 조직권은 인사권에 의해서 보완된다. 즉, 조직권을 가지고 조직의 틀을 쓴다면 인사권을 가지고 해당 공무원들이 조직의 틀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인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측근을 보임할 수 있는 전보권은 조직관리기법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보조, 보좌기간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유사보조기관을 통합하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였다. 3. 계수준의 통폐합을 하였다. 4. 탈관료제적 「팀」제를 도입하였다. 이 팀은 보통 지방 5급 혹은 6급을 팀장으로 하였다(임도빈, 1997).

이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권한들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의 감사와 통제가 있는 것은 물론

론이고, 민선 단체장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정치지도자로서 가지게 되는 제약과 한계가 따르며, 그 중 근본적인 제약은 역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이에 근거한 중앙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과 열악한 재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준, 1994). 즉, 지자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규칙제정권은 법령과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임면권과 같은 인사권의 행사도 그 주요 내용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게 되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의 임용은 물론 시험·자격·보수·신분보장·복무·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공무원 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에 기초하여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는 이행명령제 등을 통해서 강력한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3. 우리 나라 공무원 직렬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 나라는 1981년 공무원법 개정때부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 국가공무원에 있어서 5급이상은 대통령이, 6급이하는 소속 장관 및 위임된 자에 의해서 임용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5급이상의 전직렬 및 6급이하의 행정직렬 등 24직렬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타 직렬은 해당 소속 장관이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서 채용된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및 지자체의 조례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을 하게 된다. 5급 이상인 경우는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나, 6급이하인 경우는 시·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공무원의 분류는 그 직무내용의 정치성, 전문성 또는 계속성의 유무에 따라 임용자격, 실적주의, 신분보장, 보수 등을 달리하는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고 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직군, 직렬, 직류로 분류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특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한편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을 지칭하며 그 종류는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을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는 전문직,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으로 구분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인사행정체제에서 직위분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일반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직위분류제는 다수의 직위를 직류별, 직렬별, 직군별과 등급, 직급별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21조와 공무원임용령에서 직군, 직렬, 직류를 분류하고 있다(1997년 12월 31일 개정). 여기에서 직군(occupational group)은 모두 10가지 유형으로서 1. 공안직군 2. 행정직군 3. 광공업직군 4. 농림수산직군 5. 물리직군 6. 보건복지직군 7. 환경직군 8. 교통직군 9. 시설직군 10. 정보통신직군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시설직군은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 직렬(series)과 직류(sub-series)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직류는 같은 직렬내에서 담당직무가 비슷한 직위의 군을 의미하나, 전문화를 위해서 임용시험이나 임용에 활용되지만 직렬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문영훈, 1999).

이러한 우리 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능력, 자격, 실적에 두는 제도인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실적제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로서 그 일반원칙은 공직취임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개인의 능력, 적성, 자격, 실적을 기준으로 한 인사임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탄력적으로 그 내용을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유능한 전문 행정 공무원의 확보가 미흡하고, 인사배치가 융통적이지 못하고 장기적인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부적합하고, 신분보장이 약해지며, 행정상의 조정이 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중앙인사기관의 지나친 권한 강화로 인하여 중앙 집권성을 띠게 되므로, 획일적이며 경직되어 융통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99년 5월 통과된 정부조직법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 계약직 공

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방형 임용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직이 62.7%, 기능직이 23.1%로서 8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직군이 62.5%, 시설직군이 12.84%, 보건위생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1996)에서는 이러한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행정직 편중과 기술직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의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의 부족은 1995년의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 행정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무원법상 규정에 없는 직종은 임용될 수 없다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법을 개정하여야만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한계성을 갖는다. 물론 특수경력직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도 법적 귀속 및 임기가 한정되어 행정의 영속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지자체의 자체 수요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행정조직권과 공무원 임면권등의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령과 같은 상위 법령이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사관리는 현재의 중앙인사기관의 집중관리방식에서 각 부처나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향을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김판석 등, 1999).

정부에서는 현재 지방공무원제도 역시 개방형 임용제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행정분야에 계약직을 도입하고, 임용대상도 중·하위직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국장직 등 상위관리직을 포함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조직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임도빈, 1997)과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김판석 등, 1999)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 분류체계에 대한 제검토를 통해서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진재구, 1999).

III. 조정전문직의 필요성과 선진국의 사례

1. 경직된 지방공무원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의 인사재량권과 조직개편권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권한은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수요가 지역에 따라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와 직렬체계로는 환경 및 정보화 등과 관련된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지난 99년 우리 나라 지자체에서는 조정전문직이 절실히 필요하나, 현행 공무원 임용령상에 조정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그 신설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2. 시대적 수요에 부응한 조정전문직의 필요성

우리 나라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도시공원법 및 자연공원법 등이 제정되면서 공공부문에 조정의 행정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조정이라는 분야는 그 분야가 가로수 및 공원관리 등에 국한된 단순한 성격으로 도목, 임업, 농업, 원예 전문직들이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의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생태도시 개념이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생태학적인 인간성을 추구하지는 도시개발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조정의 패러다임이 건축물 주변미화로부터 적극적인 환경 조성자로 변환되었다. 그리고, 높은 도시화로 인해 더욱 도시환경에서의 조정전문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는 지역경관의 관리자로서 또한, 자연경관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생태도시라는 개념의 배후에는 종래와 같이 인간의 경제, 사회활동과 환경보전과의 관계를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고 있다(양병이, 1995). 이러한 생태도시의 구현은 어떤 특정 분야만의 기술만으로 실현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한국환경기

슬개발원, 1996). 선진국에서는 이미 친환경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에코폴리스(Ecopolis) 혹은 에코시티(Ecocity)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에코폴리스는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로 간주하여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물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의 공생을 위해서 야생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와 녹지를 보존하고 이들의 이동통로를 만들기도 한다(오순환, 1996).

현재 우리 나라의 도시환경의 개선 및 생태도시계획의 수립과 실천 등의 과제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적인 업무를 맡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자연환경조건을 고려하여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행정가가 필요한 것이다.

(Smardon and Karp, 1993)

3. 환경 선진국의 조경 전문직 사례

조경전문직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Hagman and Juergensmeyer, 1985; 김동식, 1996; 박문호, 1996; 지철규, 1996).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의 법제도 및 행정조직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정업무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면에 있어서는 기술직으로서의 조원직이 분화되어 전문가로서 조경관련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본은 1873년 부현(府縣)에 대한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에 따른 공원지 선정에 관한 행정업무를 필두로 조경에 관한 행정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23년에는 동경시에 공원과가 신설되므로 본격적으로 조경분야의 업무가 행정조직속에 합류하게 되었다. 직제로서 조경직이 생기게 된 것은 1966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상급시험에 조원(造園)이 추가되므로 전문적인 직제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1981년에는 중앙행정청인 건설성에 공원녹지부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원녹지 관련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독일은 어느 행정기구에서나 조경청, 조경국, 또 조

경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각 시의 구청마다 Gartensant 즉 조원, 조경청이 독립되어 존재한다. 조경청과 환경청이 독립된 정부기관이면서도 두 기관이 상부상조하고 있다. 조경청에는 형사대까지 편성되어 경찰권과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다. 구성원들은 조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기술자들이며 이들은 예술가이자 과학자이기도 하다. 이들의 업무는 육지 위의 풍치, 도시계획, 고속도로 설계 및 관리, 수로관리, 주택관리, 정원 및 공원관리, 바다경관, 대기경관(cloudscape)까지 광범위한 책임을 맡고 있다. 1970년에 수립된 15년 계획인 황금계획(golden Plan)으로 서독 내에서만 1만7천3백70개소의 맨 땅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맑은 공기를 조성하여 세계 축구왕국이 된 것도 독일 조경 전문가들의 역할이었다.

미국의 조경공무원들은 연방정부와 각 주의 시·군에 소속되어 있어 새로운 개발이나 일반적인 공공의 안전을 수칙으로 미관, 공사금액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까다롭고 구체적인 심의절차로 개발회사측과 협의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의 조경전문 공무원은 시에 제출되는 도면 검토를 통해서 설계의 질과 기술상의 능력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이다. 이 시의 공원관리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조경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역할은 시·군 또는 주에 속해 있는 모든 공원과 레크레이션의 공공시설물들을 관리하고 보수·유지하는 것이다. 공원관리국은 자체 내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민간단체의 컨설턴트 또는 조경디자인 회사와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즉, 미국의 지방정부나 연방정부의 공무원은 디자인과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또한 개인회사와 협력하여 경쟁사회에서의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고정된 공공환경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조경이나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계몽을 하고 있다. 이 조경관련업무로서 경관관리와 문화재 보전업무등이 림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IV. 우리 나라 조경전문직 채용의 실제

1.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방향

우리 나라에서 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함

에 따라 각 단체장 후보들은 공약을 내세우고 이에 따라 시정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지방도시인 경우는 대부분 유사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먼저 시민자치를 내세우면서, 우리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지역의 관광수의 등을 통해 지역재정을 높이기 위한 문화관광도시를 추진하고, 첨단산업의 유치에 위한 정보산업도시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서 녹색환경도시를 완성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잡은 전주시의 경우 지난 98년 시장 선거에서 3개 분야 10개 문제영역에 대한 공약을 한 바 있다(전주시, 1998). 첫번째 분야는 "1. 과감한 행정개혁으로 시정을 바꾸겠습니다"이다(1-1. 산하공무원의 친절도를 백화점 수준으로 높일겠습니다 1-2. 청정수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1-3. 시정의 생산성을 기업수준으로 높일겠습니다). 두번째 분야는 "2. 활력있는 지역개발로 지역의 면모를 바꾸겠습니다"이다(2-1. 전통문화유산을 생산화하여 소득과 연계시키겠습니다. 2-2.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영상산업을 중점육성하겠습니다. 2-3.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3. 쾌적하고 편리한 시민 생활보장으로 생활의 질을 높일겠습니다"이다(3-1.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지키고 만들겠습니다. 3-2. 그늘진 곳없이 시민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겠습니다. 3-3.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4.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을 크게 신장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3으로서 과감한 조직개편의 단행, 인사관행의 과감한 개혁, 개방형 인사관리의 확대, 행정실적평가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주시장의 공약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조정직을 포함한 전문직을 특채하여 기존의 고차관 공무원 조직을 활성화하는 주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제 2분야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개성없는 도시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번도시키면서 동시에 관광사업, 첨단산업의 유치효과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를 위한 개발에도 보전적 생태도시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 공간의 조성이 중시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 3분야에는 세부적 사업으로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소규모 시민공원의 정비 및 확대, 나무은행사업의 추진, 통화로 및 자전거 도로의 확대,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민선 시장들의 공약에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와 함께 쾌적한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녹색환경생태도시의 조성이라는 과제는 빠질 수가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약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분명 이 공약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형태로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종래의 공무원조직구조와 인원구성으로는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특화된 행정조직체계의 구성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의 조직을 시정에 맞추어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98년의 대대적인 조직축소 개편과 맞물리면서 지자체는 많은 내용을 겪으면서도 시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했다.

전주시의 경우는 1998년 8월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문화영상산업국을 신설하면서 여기에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산업진흥과, 공원녹지과와 실업대책상황실로 구분하였다.(그림 1 참조) 이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과와 녹지과가 통합된 것이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기존의 특성을 업무특성별로 팀조직으로 구성한 바 공원관리팀, 공원시설팀, 녹지팀 및 조경팀의 4개 팀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조직의 특징은 공원녹지과가 문화영상산업국에 소속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원녹지과가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전주시의 신규조직에서는 문화도시 및 영상산업 등을 활성화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문화영상산업국에 소속이 되면서 문화관광, 정보영상 등과 상호 협조를 할 수 있는 조직구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도 기존 지방정부의 구태의연한 조직구성에서 벗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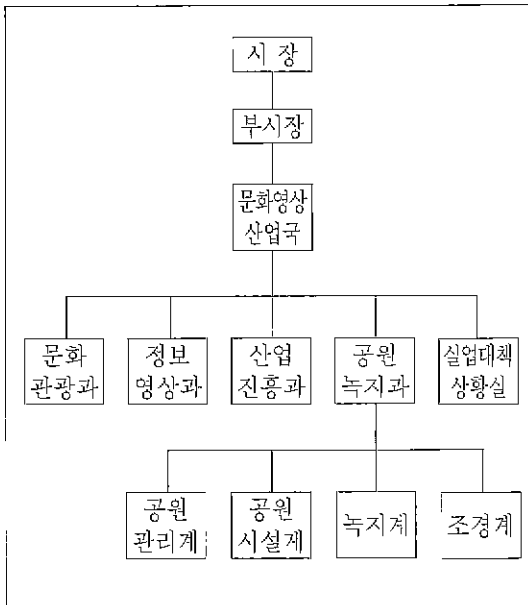


그림 1. 전주시청 공원녹지과 기동도

나 선도적인 조직을 시도한 중요한 사례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원, 녹지라는 물리적 공간 범위를 넘어가는 조경팀을 구성한 것도 돋보이는 구성체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조직체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오히려 도시과 등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국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것은 각 지자체 마다의 특성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조경 전문직 편법채용의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녹지 및 조경관련 과의 역할은 매우 크다. 즉, 현대 사회의 도시공간 활용에 있어서 조경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기존의 일률적인 도시녹지에 식상한 도시민은 향상된 생활 수준에 따라 새롭고 쾌적한 도시조경공간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전주시는 당면한 2002년 월드컵대회 및 각종 국제행사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부응한 생태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유사직렬의 도입이라는 편법을 통해 조경전문직을 특채했던 것이다(전주시, 1998).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원래 지방도시에서 5급직인 공원녹지과장의 직렬은 본래 행정직렬과 임업직렬로 책정되어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조경전문직을 특채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과장 직렬에 도시계획직렬을 행정, 임업직렬에 추가하여 책정 조정하였다. 그리고, 총무과의 행정직렬을 줄이고 조경팀장의 직렬로는 6급직 도시계획직렬을 신설하였다. 모든 부서가 축소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조경팀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직렬신설후 전주시에서는 공고 166호를 통해 지방전문직(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내었다. 이중 5급직에 해당되는 공원녹지과장의 자격기준은 조경분야 석사취득후 3년이상 실무경력자, 학사취득후 6년이상 경력자. 조경기사 1급취득후 3년이상 경력자, 2급취득후 7년이상경력자 및 5급이상공무원으로 당해분야 4년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6급직의 조경전문가는 조경분야 석사학위취득후 2년이상 실무경력자, 학사취득후 3년이상 실무경력자, 1급자격취득후 2년이상, 2급자격 취득후 4년이상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채용과정서류에서 특이한 것은 제출서류에 관련분야에 대한 추진에 대한 비전을 제출하게 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질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공무원은 3년 계약직으로 함으로서, 그 업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전주시의 조경전문직 채용의 사례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한 것으로서 생태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범적 사례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조경직을 특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기존의 공무원의 조직과 직렬구조로는 새로운 시정을 이끌어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경전문기사, 기술사, 박사 등 조경전문인에 수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임용령상 시설직군에 조경직렬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유사직렬인 도시계획직렬을 도입하고 괄호치고 조경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실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는 이 방법이나마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에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조경직 신설건의 1999. 2. 1.)이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 우리 나라의 여타 지자체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대구시 등 공무원 직군내 조경직렬 신설건의 1999. 2. 2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조경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경 전문직을 편법적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그 직제신설을 건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채용된 조경전문직 업무의 실제

1) 생태도시계획관련 업무

이렇게 채용된 조경 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가 비오톱, 그린네트워크, 생태통로계획, 생태하천 계획 등 생태도시계획 관련 업무이다. 아울러

표 1 전주시 공원녹지와 팀별 단위사무

팀	단 위 사 무 명
시 설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조성사업시행, 유원지 조성사업시행, 유원지 관리 및 단속 - 공원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 기타 공원시설물 보수에 관한 사항
관 리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진공원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지도감독, 사용료 부과 징수 -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공원시설물 관리 - 덕진공원 매표 및 수입금 관리 - 공원의 점·사용 허가 변경, 공원 미화에 관한 사항 - 공원 대장의 작성보완 등
녹 지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협 및 산림계 지도 육성, 임업후계자, 독립가 및 푸른숲 선도원 관리 - 산림보호 단속계획 수립지도 - 공유림관리시설 조성 관리 - 5대강 유역관리 및 산림기분통계조사 - 산림병해충방제 계획 수립, 산촌종합개발사업 - 내고장 명산가꾸기 및 임업기술보급지도 - 산림사업용 묘목수급 및 생산지도 - 야생조류보호 및 증식사업지도 -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지도 - 육림사업지도, 임산물가공, 유통업지도 등
조 경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네트워크화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 공원내 투수성포장면적 확대를 위한 원로정비 및 계획 - 비오톱개념에 의한 야생동식물과 멸종위기 종에 대한 서식환경을 복원하고 증식에 관한 계획 수립 - 생태통로 계획수립 및 시행 - 각종조경시설물 디자인 계획 - 기타 조경계획 설계협의 및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의 신규조성 및 재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 옥상조경 및 실내조경활성화계획수립 - 60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수립 및 시행 - 도시테마공원 조성계획 - 도시녹화사업의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광장 조경계획 수립 - 복개하천·고수부지·호안하상의 친수공간으로의 복원 -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녹지시설물 관리 - 대지안의 조경심의 관리 등.

표 2 전주시 도심지 건축물주변 자연환경 조성지침 시안

조성 단계	주 요 내 용
1. 환경조사 및 입지	1) 기존 지형 및 식생등 자연환경과 문화유적 환경을 철저히 조사하여 비오토프(생물서식공간)로서 가치를 밝혀 초기 토지이용단계에서 보존 및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2) 이를 바탕으로 적지분석을 시행하여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 및 배수로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구조계획, 밀도계획, 입지계획 및 배수로계획을 수립한다.
2. 공간체계 구상	1) 단지설계와 건축물 건축시 녹지체계를 고려하여 단지내외에 일정 규모이상의 민적, 점적, 선적의 다양한 원층녹지 및 경관녹지를 설치한다. 2) 보행특성 및 주 통학노선을 조사 분석하여 녹지산책로, 자전거도로, 통학로 등을 상호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일정 규모이상의 주차장인 경우(안 100평이상)는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한다. 주변의 운동장 등을 조성할 때는 잔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기존의 법규에서는 주차장부분과 녹지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주차장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인 경우에는 당연히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설계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시설물및식재설계	1) 도로, 주차장 등의 포장을 설치할 때 환경 친화적 투수성재료를 이용할 것. 이는 토양의 수분함량을 유지하여 하천의 상시유량을 보지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주차장의 바닥은 잔디 등이 자랄 수 있는 잔디 블록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건물 및 지상에 일정규모이상의 우수 포획 탱크를 설치하여 건기 및 상시, 옥외공간의 관수 및 하천 유지수량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물의 벽면, 옥상, 옹벽, 울타리 등은 식재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도록 한다. 4) 주요 보행로, 경관 노우드 및 하천변에는 자생 초화원을 비롯한 화훼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식재 설계시 전라북도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우리나라의 향토수종 및 초본종을 도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재설계시에는 적정 토심의 확보, 자연지형공간의 도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녹지 시설 및 공간의 유지관리	1) 이러한 녹지공간은 유지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사후 이 녹지공간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 등을 조례로서 제시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한다.
5. 심의 과정	1) 전주시의 제안에는 심의과정에 관한 제안이 없음. 이러한 생태공간의 조성은 전문적 요건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심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에 이를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의 건축 심의위원회는 건축공간에 초점을 두므로 그 위원구성이나 심의 내용상에 한계가 있음. 2) 그리고, 이의 심의를 위한 심의 도서 작성기준이 세밀하게 작성되어야 함.

도시계획입안시에 생태도시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해 도시국과 협조하여 업무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전주시의 경우에 이 업무는 표 1과 같이 조경팀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업무는 시설팀, 관리팀, 녹지팀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태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의 계획,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포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경전문직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여러 부서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경팀은 여타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도시의 물리적 환경조성 및 건축물 주변 자연환경 조성 관련 업무

조경적이 담당해야 할 또 하나의 업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미관 조성사업 등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요즘에는 생태도시라는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도심지 건축물주변에 대한 업무를 재편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도 지난 98년 7월 도심지 건축물이 갈수록 대형화, 고층화되고 주변에 인간 친화형 자연환경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웃관계결여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및 조례제정을 하고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때 시에서 작성한 시안에서 적용대상은 신축건축물(고층, 대형건축물: 8층 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미관지구 건축물, 아파트, 관공소, 학교, 공장 및 택지관련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 시안은 단지내 주변 생활터리 조성, 건축물 옥상조경 및 휴식공간 조성, 대로변 아파트 발코니 꽃박스 설치, 자연소재 조형물 및 연못, 실개천 설치, 응벽 부분 담쟁이 넝쿨 식재, 거목 및 자연 동산 보호, 연못 및 실개천 설치, 단지 주변 완충녹지 및 녹지 산책로 개설이 제안되었다.

이 안에서는 조성지침에서 자연환경의 조성개념을 기존의 개념에 따라 조경시설위주로만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대단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상안이었다.

실제 건축물주변에 제대로 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표 2와 같이 단지설계 및 건축물설계 초기단계인 입지구상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조경전문가에 의해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건축조례의 대지내 조경관련 업무

대지내 조경은 생태도시계획에 있어서 점적인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대지내 조경은 건축법 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안의 조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건축조례에서 조경면적, 식재기준, 조경공사비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전주시 건축조례의 예를 보면 제 26 조(대지안의 조경)에서 용도지역별 연면적별 5%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옥상조경 및 건축선 후퇴지역에서의 조경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27조에서는 조경면적당 식재 밀도와 상록수와 활엽수의 비율 및 파골라 등의 조경시설물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건축조례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건축심의도면작성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에 여기에 조경면적, 수종, 수량, 규격을 표기한 조경계획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에서 조경계획은 성장가능한 곳에 계획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경에 대한 법적 규정으로 인해 각종 건축물주변의 조경심의회는 단순히 대지내 식재공간안에 수종을 결정하여 식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지자체에서나 행정부문에 있어서 조경에 대한 문제는 수종이나 결정하는 단순한 문제로 간과되기 일수였다. 건축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하면 규정된 범위의 한계를 지나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대지내 조경에 관한 업무지침에 대해 표 3과 같이 내부적 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한 바 있다. 이러한 지침은 행정조직내에서 조경전문가에 의해 지도되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세부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조경공간이 생물서식

표 3. 전주시 건축조례시행규칙내 조경 심의 도면 작성 방법(안)

유 형	내 용
1. 기본사항	1) 조례기준에 의거하여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유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할 것. 2) 조경계획도 및 설계도는 공간구성이란 차원에서 설계할 것(앞과 뒤, 중심과 외곽). 3) 주변지역 여건 및 건물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것. 4) 차폐수종과 경관수종을 구분하여 설계할 것. 5) 전주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고 계절별 색채 및 질감 변화를 고려할 것. 6) 같은 수종을 모아 심어 공간적 특징을 부여 할 것(선형으로 반복되는 가로수식 식재지양). 7) 이 조경공간은 도시의 생태서식공간(Biotope)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도면 작성 방법	1) 도면의 범위는 인근 도로 및 대지를 포함하며 현재의 가로수 및 인접대지의 공간현황, 유타리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설계 도면의 축척은 1: 20-50으로 작성한다 3) 조경설계의 개요와 함께 비오토프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기술한다. 4) 설계평면도는 (1) 상록과 낙엽, 교목과 관목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2) 식재당시의 규격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한다(수관폭은 수고와 같은 수치로 표현). (3) 도면의 수종은 인출선을 뽑아서 작성하고 같은 수종은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범례로 수종을 표시하지 말 것. 모든 수목은 인출선으로 연결되어야 함). (4) 관목의 표현방법을 제대로 쓸 것. (5) 보행동선특성을 표현하고, 바닥평면 계절 및 페턴을 표현하도록 한다. (6)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의 특성이 표현되도록 한다. 5) 설계입면도 및 단면도 (1) 각 수형에 따른 형태와 수고를 표현 할 수 있는 입면도를 작성한다. (2) 입면도에는 그 배경이 표현되도록 한다(건물면, 벽면 등). (3) 주요 보행접근로나 조망점에서의 눈높이 투시도를 2장이상 작성한다. (4) 경계석이나 화단의 상세 단면도, 평면도를 제시하고, 하부구조물을 표현하도록 한다(토심깊이, 정화조 등이 표현되도록 한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주시의 조경전문조직에서의 조경전문가의 업무의 영역과 실제 제안되어 수용된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실제 조경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하고,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이는 실제 조경학과에서 강의되고 있는 조경관계법규의 범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지구와 관련하여 국토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이 관련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 및 보행로, 주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자연공원, 문화재,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어린이 놀이터, 도시설계, 주택단지와 산업단지가 직접

관련된다. 그리고, 관광휴양지와 관련하여 관광지, 농어촌 휴양지, 자연휴양림, 온천지,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각종 환경영향평가관계 규정이 관련되는 것이다(이명우외, 1998). 이러한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행정조직내에서 어떻게 상호 관련시켜 조경전문직에 의해 특성화시킬 것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권과 조직구성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무원 임용령 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2. 현재의 우리 나라의 공무원 임용령은 직렬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3. 우리 나라의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시정방향에는 문화관광도시 및 녹색환경도시의 조성이 시정 제 1의 과제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내에 조정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4. 지자체의 생태도시계획관련 업무, 대지내 조정 및 공지, 도시환경과 관련된 전문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정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하고, 인근 부서를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5. 조정전문직 공무원을 합법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상위법인 공무원 임용령상에 조정 직렬과 조정직류를 신설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생태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에민에게 친환경적 삶의 공간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인 도시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조직인력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기획력과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민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수요요구는 비단 전주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시급히 공무원 조정직을 신설하여 시대에 적응하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에 도움을 준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남희양, 전주시청 및 도청 관련 공무원, 조정학회 조정직제 설치추진 특별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인용 문헌

- 1 김동식(1996) 미국조정공무원의 역할, 환경과 조정 pp. 98-99
- 2 김병준(1994) 한국지방자치론: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경영.광명사 pp.284-286, 288-291, 47-49
- 3 김관석, 권경득(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33(1) 99-118
- 4 기사연 지자체 연구위원회(1991) 지방자치제와 한국사회 민주변혁,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pp. 17-18
- 5 문영훈(1999) 신 행정학, 태학관, pp. 327-364
- 6 박문호(1996) 일본의 조정관련 기구 및 조직, 환경과 조정, pp 91-97
- 7 배효영(1996) 공무원 임용시험과목분석과 조정관련분야 인력배치현황, 환경과 조정, p 59
- 8 법제처(1998) 헌법 제 117조
- 9 법제처(1998) 지방자치법 39조, 56조, 58조, 157조
- 10 신익순(1997) 국내의 조정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양병이(1995) 친환경적 공간재생으로서의 전환, 환경과 조정, pp. 55-56
- 12 오순환(1996) 조정직 실시의 당위성, 환경과 조정, pp.70-71
- 13 이명우, 권오준, 임봉구(1998) 조정설계시공관계법규, 도서출판 조정
- 14 이명우, 권오준, 임봉구(1998) 관광휴양지계획관계법규, 도서출판 조정
- 15 임도빈(199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학보 31(3) 57-71
- 16 전주시(1998.7) 도심지 건축물주변 자연환경 조성 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 조희
- 17 전주시(1998) 건축조례
- 18 전주시(1998.8) 공고 제166호: 지방전문직(계약직) 공무원채용시험계획공고
- 19 전주시(1998) 공원녹지과장 직렬조정공문
- 20 전주시(1998)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안
- 21 전주시(1998) 공약사업(안) -3분야 10문제 영역의 64개 세부사업
- 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13조 1항, 21조 2항
- 23 지방행정연구원(1996) 지방공무원 직렬 재조정에 관한 연구
- 24 지철규(1996) 독일조정직을 통해 본 국내조정직설의 필요성, 환경과 조정 pp. 88-93
- 25 진재구(1999)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인사행정기관 및 공직 분류체계 개편방안, KIPA
- 26 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6) 생태도시조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환경부 p. 212
- 27 Hagman, G. Donald, Julian C. Juergensmeyer(1985) Urban Planning and Land Development Control Law (2nd ed.), west publishing co. pp. 416-477
- 28 Smardon, Richard C., James P Karp(1993) The Legal Landscape, van nostrand reinhold pp. 23-24